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가단1067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3342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가단106729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병주, 정민지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장재혁

변론종결 2023. 1. 19.

판결선고 2023. 2. 9.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5. 접수

제849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하고, 다른 법인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 2015. 6. 25.자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3억 600만 원, 2015. 9. 21.자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5억 400만 원 등 합계 8억 1,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C는 2015. 6. 25.자 여신거래약정 당시 근보증액 3억 6,720만 원, 2015. 9. 21.자 여신거래약정 당시 근보증액 6억 480만 원의 각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소외 회사는 2016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원리금 납입을 연체하였는데, 2018. 1. 14. 기준 남아있는 원리금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3,955,373원이다.

순번	과목	대출(약정)일	약정금	잔여원금	이자 등	소계	근보증액	연대보증인
1	일반자금대출	2015. 6. 25.	306,000,000	161,500,000	19,386,436	180,886,436	367,200,000	C
2	일반자금대출	2015. 9. 21.	504,000,000	297,908,025	35,160,912	333,068,937	604,800,000	C
합계				459,408,025	54,547,348	513,955,373		

3) 원고는 2018년 1월경 소외 회사 및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자 조정신청을 하였고, 그 조정사건에서 2018. 8. 30. ‘소외 회사 및 C는 연대하여, 180,886,436원 및 그 중 161,5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C의 연대책임한도는 367,200,000원으로 하고, 333,068,937원 및 그 중 297,908,025원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C의 연대책임한도는 604,8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머543464호,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C는 2016. 10. 5. 소외 회사의 감사이던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5. 접수 제8495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의 재산상황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의 원리금 납입이 연체되었던 2016년 12월경 C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였고,

늦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8년경에는 C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해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인 2021. 2. 2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금융기관 등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참조). 또한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재산조사 업무기준에서는 ‘① 정리여신이 발생하였을 때에 채무 관련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전 재산조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재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에 대하여는 채무 관련인의 여신 취급 당시로부터 최종 주소지까지의 주소지 이동상황을 추적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조사한다. ③ 재산조사 결과 실익 있는 재산이 발견되면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등 필요한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고,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 및 채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청구소송 등의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의 직원이 소외 회사와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8년 1월 무렵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식한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원고가 2018년 1월경 C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그 이전에 위 업무기준에 따라 C의 재산을 조사하면서 취소원인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원고의 직원 E은 2017년 1월 무렵의 재산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일반가격을 4억 8,000만 원으로 파악한 후 ‘보전조치 실익 판정현황’을 작성하면서 위 추정시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등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2,180만 원을 제외하고 나면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어 가압류를 신청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기재하였으므로 당시 원고로서는 재산 처분행위인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성을 인식하였다면 그에 대응하는 법률적 조치를 검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의견 외에는 별다른 기재가 없는 이상 원고가 위 재산조사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C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고 C에게 사해의사가 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2017. 6. 29.경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대손상각한 후 본점 여신관리부에서 관리하였는데, 2020. 6. 3.경에 이르러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고 2020. 6. 2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C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와 2015년 이후 C에 대하여 실시한 재산조사 자료 일체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조치가 있었던 2020년 6월 전에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임을 인식하였다거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피고는 C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원고에게 재산세 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C의

채무초과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는 소외 회사에 대한 2015. 6. 24.자 및 2015. 9. 21.자 각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이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보전조치 실효 여부를 검토한 2017년 1월경이나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8년 1월경 C의 전체 재산규모 또는 이 사건 부동산 외의 재산 소유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6. 10. 5.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채권자들 중 1인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윤한

별지